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3. 8. 30.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김지훈(민) 의원 등 열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8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의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사후관리 조항을 구체화하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업 유치투자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22조)
 -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전략사업 등
- 나. 세부 지원범위 확대(안 제26조~제27조)
 - 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추가
- 다. 대규모 유치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안 제28조)
- 라. 보조금의 취소 및 환수 조항 신설(안 제32조)
 - 지원금의 부당한 취득·이용 방지를 위한 세부 규정
- 마. 기업유치 포상 규정 신설(안 제3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1
- 나. 예산조치 : 불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기업지원과
- 라. 입법예고 : 2023. 8. 30. ~ 9. 4. (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 안 제5조에 기업 유치에 의지 표명과 강화를 위해 심의 자문기구 명칭을 ‘기업지원위원회’에서 ‘기업 유치·지원위원회’로 변경하였고,
 - 안 제22조의 유치 및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형 공장과 지식기반산업에 국한한 것을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개정하여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과 대규모 유치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 안 제32조 및 제33조에는 보조금 등의 취소 및 환수와 기업유치 포상 조문을 신설하여 사후관리 강화와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부칙에는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능률성을 높였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유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기존 조례에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와 보상 등을 위한 세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표 3> 남양주시 산업단지 지정 현황(2023. 08. 현재)

	진관일반산업단지	금곡일반산업단지	광릉테크노밸리
위치	진건읍 진관리 985-3번지 일원	진접읍 금곡리 2050번지 일원	진접읍 팔야리 827번지 일원
면적	142,000㎡ (산업시설용지 98,303㎡)	130,199.1㎡ (산업시설용지 71,860.4㎡)	209,768㎡ (산업시설용지 106,805㎡)
주요 유치업종	섬유 및 의복, 고무 및 플라스틱, 종이 등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종이 등	고무 및 플라스틱, 전기장비, 섬유 및 의복 등
사업기간	2008.2. ~ 2012.12.	2002.9. ~ 2015.6.	2006.7. ~ 2012.12.

<표 4> 경기도 주요 시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2022.12.30.
2	수원시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30.
3	용인시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30.
4	고양시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023.07.03
5	김포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2.04.06
6	성남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12.13
7	파주시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019.12.27.
8	평택시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2023.06.27
9	오산시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011.12.28.
10	의정부시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9.19.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차.(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자.(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너.(생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7. (생략)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26조(입지보조금 지원)

- ① 시장은 제2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의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부지매입금 및 건물취득비 등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기금으로 부지매입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시장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여 공장부지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시설보조금 지원)

- ① 시장은 제2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2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금으로 시설비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8조(대규모 유치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 첨부 사유

향후 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세부적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장 임대훈